

---

# 2019년도 방송평가 관련 규칙 및 세부기준

---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08.05.19.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7호  
개정 2009.11.05.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호  
개정 2010.12.30.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1호  
개정 2011.12.30.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3호  
개정 2013.12.30.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3호  
개정 2016.01.29.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1호  
개정 2016.08.19.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5호  
개정 2016.12.28.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7호  
개정 2018.12.05.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평가의 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방송평가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둔다.

②방송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방송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

장이 지명하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조계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5. 시청자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방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임·직원 및 사외이사로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
5.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방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 용역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방송평가위원회 직무)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3. 기타 방송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리

제7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의무 등) ①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방송평가위원회 운영) ①방송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방송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방송평가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방송평가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서면회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방송평가지원단 구성·운영) ①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의 내용영역, 편성영역 및 운영영역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7인 이내로 방송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방송평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영, 회계, 행정,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
2.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3.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방송평가지원단은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용, 편성 및 운영평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④방송평가지원단은 방송평가가 종료되거나 당해 업무 수행이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견 청취) 방송평가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대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대상) 방송평가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제13조(평가대상 기간) ①방송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 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연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해당 연도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평가유예) 방송평가대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신규로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당해의 방송분
2. 방송평가위원회가 방송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자군의 당해 방송분

제14조(평가영역)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15조(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등) ①평가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는 별표와 같다.

②방송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의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각 평가영역에 부여된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내용 및 편성영역의 평가항목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척도를 적용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 거부하는 경우
3.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방송평가결과의 공표)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결과 공표시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제7호, 2008. 5. 19.>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2009년에 실시하는 2008년 방송평가부터 적용한다.

#### 부 칙<제14호, 2009. 11. 5.>

이 공고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호, 2010. 12. 30.>**

이 공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2년도에 실시하는 2011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3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항목의 적용)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3년도에 실시하는 2012년도 방송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단, ‘디지털전환을 위한 노력’ 평가항목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2014년도에 실시하는 2013년도 방송평가 분까지 적용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2016년도에 실시하는 2015년도 방송평가 분까지 적용한다.

**부 칙<제33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개정 규칙 제5조 제4호 및 제5호, 제8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새롭게 방송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때로부터 적용하고, 별표 중 개정 사항은 2015년도에 실시하는 2014년도 방송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원 임기의 적용) 제3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방송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41호, 2016.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7년도에 실시하는 2016년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5호, 2016.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7년도에 실시하는 2016년 7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7호, 201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0년에 실시하는 2019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중앙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700점)

① 내용영역(280점)

평가항목	배점 (280)	평가척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65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중 네트워크 본사 (KBS, MBC, SBS) -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KI) 결과 활용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65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35	-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여부, 결과 공표 등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35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등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② 편성영역(270점)

평가항목	배점 (270)	평가척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55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등 9등급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 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25점)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 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25점)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50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보도 40%·오락 60%) 편성비율 평가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 UHD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 평가대상 : UHD 프로그램 본방송 개시 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25	-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0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 ③ 운영영역(150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3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업체 운영 등 평가 ※ 평가대상 : KBS, MBC, SBS, EBS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2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li> </ul>
<p>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6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p>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2.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지역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600점)

#### ① 내용영역(180점)

평가항목	배점 (180)	평가척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5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40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등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4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② 편성영역(270점)

평가항목	배점 (270)	평가척도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70	- 자체제작 편성비율 평가 ※ 평가대상 : KBS-1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 편성 방송사업자 제외) · KBS-1 지역총국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MBC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민방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등 9등급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25점) -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25점)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30	-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0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 ③ 운영영역(150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20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0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10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p>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p>
<p>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p>	<p>-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6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p>	<p>-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p>-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3. 지상파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 중앙/지역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300점)

##### ① 내용 및 편성 영역(150점)

- 적용 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TV·라디오 겸영사업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등 9등급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35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5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2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 ② 운영영역(150점)

- 적용 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 지상파 TV·라디오 겸영사업자의 라디오 운영평가는 TV 평가결과를 적용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li> <li>-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li> </ul>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6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li> </ul>

	<p>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30	-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등 9등급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직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20	- 지역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종합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1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1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 ② 운영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40	-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등 평가

채널공급 계약 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40	-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40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	25	- 공공·공익·복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li> <li>-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li> </ul>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6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5. 위성방송사업자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150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 등 9등급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직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25	-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15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1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② 운영영역(350점)

평가항목	배점 (35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4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40	-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평가

채널공급 계약 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40	-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3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5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3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	30	- 공공·공익·복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li> <li>-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li> </ul>

<p>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6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p>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600점)

#### ① 내용영역(250점)

평가항목	배점 (250)	평가척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55	-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KI) 결과 활용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55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4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35	-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 여부, 결과 공표 등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35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등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② 편성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45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등 9등급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 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20점)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 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20점)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40	- 방송분야(보도 40%·오락 60%) 편성비율 평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25	-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0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 ③ 운영영역(150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3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업체 운영 등 평가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2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20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p>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p>
<p>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p>	<p>-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6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p>	<p>-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p>-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350점)

평가항목	배점 (350)	평가척도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7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6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등 9등급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4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40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등 평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30	-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평가

#### ② 운영영역(150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20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0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li> </ul> </li> <li>-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li> </ul>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li> </ul>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li> </ul>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li> <li>-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li> </ul>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li> </ul>

	<p>명예훼손 판결시 6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8.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평분야)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자체심의 및 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7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허위과장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25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등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5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20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등 9등급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15	-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평가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 ② 운영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40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30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0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3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30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결과 등 평가
상품선정 기준의 적정성 평가	30	-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30	-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조치 건수 등을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주의 1점/ ②경고 2점/ ③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④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②+③, ②+④ 5점/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 ⑥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 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허위·과장 광고 (제2장 제5조 일반원칙, 제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23조 최상급 표현)와 제2장(허위 ·과장 광고 관련 제외), 제3장, 제4장, 제5장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허위· 과장광고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p>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V/라디오방송)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300점)

#### ① 내용 및 편성 영역(100점)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척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종합 평가	30	- DMB용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25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25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 등 9등급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15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5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 ② 운영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3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0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3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li> <li>-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li> </ul>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6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li> </ul>

	<p>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시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시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시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개정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18.12.5.)에 따른  
**방송평가 세부기준**  
**내용/편성/운영 영역**

---



# 목 차 I

## □ 내용영역

1.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 41
2.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 42
3.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 43
4. 자체심의/공정보도(허위과장방지)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 .. 45
5.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47
6.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 50

## □ 편성영역

7.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 52
8.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 53
9.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 55
10.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56
11.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 59
12.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 60
13.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 62
14.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 64
15. 직접제작 ·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 66
16.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평가 ..... 67
17.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 68
18.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 ..... 69
19.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종합 평가 ..... 70

## 목 차 II

### □ 운영영역

- 2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 72
- 21.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 평가 ..... 73
- 22.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 76
- 23.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 78
- 24.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 79
- 25.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81
- 26.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 83
- 27.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 85
- 28.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 86
- 29.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 ..... 87
- 30.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 ..... 88
- 31.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 90
- 32.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 92

### □ 감점

- 33.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93
- 34.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 95
- 35.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96
- 36.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 97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KBS, MBC, SBS와 종편PP

### 나. 배점방식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결과를 배점에 맞춰 환산한 후 평가점수로 반영  
(환산점수 = 프로그램 평가지수 점수 × 6.5(지상파TV), 5.5(종편PP))

평가척도	배점	
	지상파TV	종편PP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65점	55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KI 시청자평가조사 중 프로그램 평가지수 조사결과만 방송 평가에 반영
- 프로그램 평가지수는 개별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1점 척도(0~10점)로 구성된 만족도 평가지수(SI : Satisfaction Index)와 품질 평가지수(QI : Quality Index)의 결과 값을 합산, 평균하여 산출

##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KBS, MBC, SBS와 종편PP

###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35점
실시여부	- 실시 10점/ 미실시 0점	10점
평가제도 축소여부	- 유지 5점/ 축소 0점	5점
평가결과 제출여부	- 제출 3점/ 미제출 0점	3점
평가결과 공개여부	- 전문공개 9점/ 공개열람 6점/ 요약본 공개 3점/ 미공개 0점	9점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여부	- 피드백 시스템 구축 8점/ 단순 피드백 4점/ 없음 0점	8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실시여부의 경우, 연 1회 이상의 조사 실시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제도 축소 여부의 경우, 조사예산규모 기준 전년 대비 30% 이상 축소한 경우를 의미함
- 평가결과 공개여부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사내 열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미공개로 간주. 공개수준(요약본 공개, 전문공개)에 따라 차등 평가함. 다만,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전문을 방통위 등 외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회 도서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 공개열람으로 간주
-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 여부의 경우, 사장보고, 임원회의, 편성회의, 제작진 설명회, 경영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제작진 또는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순 피드백으로, 프로그램 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춘 경우를 피드백 시스템 구축으로 간주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홈쇼핑PP 제외)

### 나. 배점방식

- 방송프로그램 수상실적을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 매체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최고점을 기준으로 9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 매체구분 : 지상파TV(중앙)/지상파TV(지역)/지상파R(일반)/음악FM/SO·위성/중편PP/보도PP/지상파DMB-TV/지상파DMB-R

※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는 제외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배점				
	지상파 TV, 보도PP	중편PP	지상파R	지상파 DMB	SO/위성
	50점	40점	35점	25점	10점
87.5% 이상	50점	40점	35점	25점	10점
75% 이상 ~ 87.5% 미만	45점	36점	31.5점	22.5점	9점
62.5% 이상 ~ 75% 미만	40점	32점	28점	20점	8점
50% 이상 ~ 62.5% 미만	35점	28점	24.5점	17.5점	7점
37.5% 이상 ~ 50% 미만	30점	24점	21점	15점	6점
25% 이상 ~ 37.5% 미만	25점	20점	17.5점	12.5점	5점
12.5% 이상 ~ 25% 미만	20점	16점	14점	10점	4점
12.5% 미만	15점	12점	10.5점	7.5점	3점
0%	10점	8점	7점	5점	2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평가기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수상실적 인정범위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대상(大賞, 창의발전, 사회문화, 지역발전, 뉴미디어, 시청자제작, 라디오 프로그램상 및 특별상)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유관단체 : 전국규모의 방송유관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시청자단체 : 시청자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기 타 : 해외 우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명망 있는 언론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기타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등
- 대상 프로그램 및 수상기간에 따른 원칙에 의거하여 배점함
    -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수상실적은 개별 장르에 한정된 수상실적에 우선함
    - 연간단위의 수상실적은 분기 및 월간단위의 수상실적에 우선함
  - 자체제작이 50%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자체제작 프로그램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가산하여 반영함
  - 자체제작이 아닌 타 방송사의 우수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수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반영함
  -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수의 시상주체로부터 수상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상실적 점수 1회만 인정함
  - 개인상 부문을 포함함(단, 제작부문에 한함)

## 자체심의/공정보도(허위과장방지)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보도PP (70점)	홈쇼핑PP (70점)	지상파R (20점)	지상파TV중양* (65점) 중편PP* (55점) 지상파TV지역* (50점) 지상파DMB-TV*(5점)
전담부서 설치여부	- 설치 만점/ 미설치 0점	10점	20점	5점	
제작물 심의비율	- <표1> 참조	5점	-	-	
제작진 참여여부	- 미참여 만점/참여 0점	5점	15점	5점	위성** (15점) SO** (10점) 지상파DMB-R** (5점)
방통위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 <표2> 참조	15점	-	10점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운영	- <표3> 참조	35점	35점	-	

(\*)(\*\*) 점수 산정 방식

- : (\*) 보도PP 7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 점수 산정
- (\*\*) 지상파R 2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 점수 산정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참여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등을 평가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각 항목별(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등) 평가 점수 합산
-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은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의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문제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표1〉 제작물 심의비율에 따른 점수표

80%이상-100%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5점	4점	3점	2점	0점

〈표2〉 심의제재결과 중 사전 지적 비율에 따른 점수표

사전지적비율	80%이상-100%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0%
보도PP	15점	12점	9점	6점	3점	0점

※ 수중계 프로그램 제외

〈표 3〉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 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점수표

항목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의 구성 여부	제도의 운영결과			
		운영결과 上	운영결과 中	운영결과 下	운영결과 없음
보도/홈쇼핑PP (35점)	20점/0점	15점	10점	5점	0점

-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라 함은, 기존 시청자위원회와는 달리 공정보도(허위과장)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방송사 내부에 별도로 구축된 조직 또는 회의체로, 방송사 내부 구성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 홈쇼핑PP는 허위과장, 나머지 사업자는 공정성

- 자율규제 제도의 운영결과는, 운영결과의 정리, 전기 논의결과의 반영, 차기 일정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동일 사업자군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 \* EBS 제외

##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보도PP (40점)	지상파TV지역, 보도PP* (40점) 지상파TV중앙, 종편PP* (35점) 홈쇼핑PP* (25점)
편성시간대	- <표1>, <표2> 참조	20점	
시청자평가원 운영	- <표3> 참조	5점	
평가원 운영보고서	- <표4> 참조	5점	
시청자평가시간	- <표5>, <표6> 참조	10점	

(\*) 점수 산정 방식

: 보도PP 4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는 자체제작과 수중계 프로그램을 모두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0점
  - 자체제작 비율 50% 미만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 편성한 경우, <표1>의 편성시간대에 따른 평가를 실시, 평가점수의 50%를 가산하여 반영함.
  - 다만, 수중계와 자체제작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점수의 합계는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표1>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지상파TV의 경우)

편성시간대			등급 (점수)
월-금	토	일	
20:00-24:00	19:00-23:30	18:00-23:30	A(20점)
08:30-09:30	08:30-09:30	08:30-18:00	B(15점)
19:00-20:00	17:00-19:00 23:30-24:00	23:30-24:00	
07:00-08:30	07:00-08:30	07:30-08:30	C(10점)
09:30-12:00	09:30-17:00	-	
18:00-19:00	-	-	
24:00-00:30	24:00-00:30	24:00-00:30	
00:30-07:00	00:30-07:00	00:30-07:30	D(5점)
12:00-18:00			

\* 지상파TV의 편성시간대는 KOBACO요금표 기준으로 산정

<표2>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PP의 경우)

편성시간대		등급* (점수)
월-금	주말	
19:00~01:00	17:00~01:00	A(20점)
06:00~19:00	07:00~17:00	B(15점)
01:00~06:00	01:00~07:00	C(7.5점)

○ 시청자평가원 운영 및 운영보고서 평가

- 시청자 평가원 운영의 경우, 평가원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
- 시청자평가원 운영보고서는 프로그램 방송일자, 평가원 명, 출연시간, 평가 내용/아이템 등이 모두 담겨 있는 경우, 양호/우수로 평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시청자평가시간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시간 중 자사 프로그램 홍보나 기획 프로그램을 제외한 시청자의견 코너가 차지하는 시간 비율(시청자평가원 시간 포함, 진행자 멘트 /브리지 등 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표3> 평가원 운영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시청자 평가원 운영	운영정도(등급)			
	3인 이상(A)	2인 운영(B)	1인 운영(C)	미운영(D)
보도PP	5점	3점	2점	0점

<표4> 평가원 운영보고서 제출에 따른 평가점수

시청자 평가원 운영	제출 여부		제출보고서 평가	
	제출	미제출	양호·우수	미흡
보도PP	2.5점	0점	2.5점	1점

<표5> 시청자 평가시간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보도PP)

시청자 평가 시간(프로그램 기준)	등급
30% 이상	A(10점)
25% 이상 - 30% 미만	B(7점)
20% 이상 - 25% 미만	C(4점)
20% 미만	D(1점)
0%	0점

<표6> 시청자 평가시간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홈쇼핑PP)

시청자 평가 시간(프로그램 기준)	등급
15분 이상	A(10점)
10분 이상 - 15분 미만	B(7점)
5분 이상 - 10분 미만	C(4점)
5분 미만	D(1점)
0분	0점

##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보도PP (40점)	
시청자 의견반영 전담부서 설치 여부	- 설치 10점/ 미설치 0점	10점	지상파TV지역* (40점) 지상파R* (35점) 지상파TV중양, 종편PP, 위성* (30점) 홈쇼핑PP* (25점), SO* (20점), 지상파DMB* (15점)
의견반영 결과정리 제출여부 및 평가	- 제출 5점/ 미제출 0점 -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10점	
의견반영 결과정리 공개여부	- 전문공개 10점/ 공개열람 8점/ 요약본 공개 5점/ 미공개 0점	10점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른 감점	10점	

(\*) 점수 산정 방식

: 보도PP 4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의견반영 전담부서의 경우, 시청자 의견 접수 처리 등과 같은 관련업무의 분장이  
직제 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의견반영 결과정리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 등을 의미함
  - 결과정리는 시청자 의견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의미하며, 홈페이지 Q&A의 갈무리 등은 결과 정리로 인정하지 않음
  - 시청자 의견의 분류, 내용 정리, 사례 제시, 검토 결과(시사점) 등이 종합적/체계적으  
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자군의 우수 사례를 기  
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 의견반영 결과정리 공개여부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사내 열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미공개로 간주. 또한,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수준(요약본 공개, 전문공개)에 따라 차등 평가함
  - 다만,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전문을 방통위 등 외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회 도서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 공개열람으로 간주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평가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건당 감점 처리
  - 주의 1점
  - 경고 2점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병과 시 6점
  - 시정명령 8점
  - 과징금 부과 10점

##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보도PP, 종편PP, 홈쇼핑PP

###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보도PP (30점)	지상파TV지역* (30점) 지상파TV중앙, 종편PP* (25점), 홈쇼핑PP* (15점)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개최 만점/미개최 0점	5점	
회의록 공개 여부	- 공개 만점/비공개 0점	5점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여부	- <표1> 참조	5점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여부	- 시한준수 만점/위반 0점	5점	
시청자 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	- 운영의 충실성, 의견반영 정도 등	10점	

(\*) 점수 산정 방식

: 보도PP 3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표1>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비율에 따른 평가점수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비율	80% 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20%이상	20%미만	없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방통위에 매월 보고한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월간 운영실적 보고시한(매월 20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는 0.5점씩 감점(최대 5점)
-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는 각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에게 설문조사한 값의 평균치 사용. 이 때, 설문지 내용은 운영의 충실성, 의견 반영 정도 등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점수는 5점 척도를 사용함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종편PP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지상파TV (50점)	종편PP* (40점)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표1> 참조)	25점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표2>참조)	25점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5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 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어린이 프로그램’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정규, 특집)된 것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3호 :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인정된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과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1. 취학 전 아동 종합교육 프로그램(예시> TV유치원)
2. 동요/동화구연/옹변/춤/체육 등 어린이 참여 경연대회 프로그램
3. 어린이 언어교육, 과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 특정분야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이 명백한 프로그램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8%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1〉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8% 이상	8.0% 미만	7.0% 미만	6.0% 미만	5.0% 미만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1.0% 미만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25점	22점	19점	16점	13점	10점	7점	4점	1점

\* 편성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2〉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4% 이상	4.0% 미만	3.5% 미만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미만	1.0% 미만	0.5% 미만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0.5% 이상	
25점	22점	19점	16점	13점	10점	7점	4점	1점

\* 편성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 나. 배점방식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의 편성 실적을 평가
-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편성비율은 방통위가 집계하는 장애인 방송실적을 근거로 평가
- ※ SO/홈쇼핑PP 중 고시에 따른 의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한 사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동일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음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보도PP (60점)	지상파TV* (50점) 종편PP, 홈쇼핑PP, 위성* (40점) SO* (30점)
자막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 등급 평가	24점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		12점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24점	

(\*) 점수 산정 방식

: 보도PP 6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의
- 자막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전자 코드 형태로 변환 전송하여, TV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한국수어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안에 또 하나의 분리된 화면 (Picture in Picture)을 통해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수화로 통역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프로그램 인물들의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장면의 상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 TV지역, 보도PP	지상파 R	SO/ 위성	지상파 DMB	홈쇼핑 PP
		60점	60점	30점	25점	20점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 재난방송의 편성 실적에 대한 9등급 평가	15점	20점	6점	15점	10점
	- 재난피해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에 대한 9등급 평가	15점	15점	4점	5점	5점
	- 재난방송 실시율에 대한 5등급 평가	10점	10점	6점	-	-
재난방송 매뉴얼의 적정성	- 자체 제작된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여부(매뉴얼 마련 시 만점 / 없는 경우 0점)	5점	5점	4점	5점	5점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 (관련 인력 운영 시 만점 / 미운영시 0점)	5점	5점	6점	-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5점	5점	4점	-	-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시정조치 비율	-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을 시정 조치한 비율을 5등급 평가(<표1> 참조)	5점	-	-	-	-

※ 지상파TV중양(55점), 종편PP(45점) 점수 산정 방식

: 보도PP 6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거함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평가방식 : 비교평가 대상군(群)\*의 실적에 따라 5등급 또는 9등급 상대평가

\* 비교평가 대상군(群) : 지상파TV/종편PP/보도PP/지상파DMB(TV), 지상파R/지상파DMB(R), SO/위성, 홈쇼핑PP

※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는 제외

- 재난방송 편성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총 편성시간 량으로 평가
  1. 재난발생시 혹은 재난발생 전후 정규 프로그램과 별도로 편성한 속보/특보 등의 특집 프로그램 방송시간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시간도 포함)
  2. 정규 뉴스 프로그램 내에서 방송한 재난관련 보도시간
  - ※ 단순 사고나 사건 등은 재난에 해당되지 않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 영상을 포함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자막방송 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 ※ 자막방송 실적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설정
  - ※ 수중계가 없는 독립지역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 건수의 차이를 반영하여 편성실적 산정 시 가중치 적용
  
- 재난피해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제작/방영된 캠페인 등을 의미함
  - ※ 재난관련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모든 다큐멘터리는 재난방송 편성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재난방송 실시율이라 함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요청건수 대비 재난방송을 실시한 비율을 의미함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는 전임 또는 겸임(재난방송 업무와 타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으로 재난방송 업무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은 재난방송 매뉴얼 교육 및 재난 예방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직원교육 실적을 교육 시간량에 의거하여 평가 (온라인 강의실적 제외)
  -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직원을 참여시키거나 전문 강사의 초청강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경우도 교육실적으로 인정
  - ※ 민방위 비상소집, 예비군 종합방호훈련 등 재난방송의 제작·편성 또는 송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직장 내에서의 비상훈련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한 비율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요구한 시정조치 건수 대비 시정건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기준은 <표1>과 같음

<표1> 방송재난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시정 조치 비율 평가 기준

비율	100%	80%이상	60%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0점

※ 대상 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제1호**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지상파TV, 종편PP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10점)
공익광고 편성비율(<표 1> 참조)	5점
광고판매기준시간대별 편성비율(<표 2> 참조)	5점

### 다. 평가점수 산정 기준

-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와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를 말함

-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10조)\*를 기준으로 초과 실적에 대해 5등급 평가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그 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표1> 공익광고 편성비율 평가 기준

고시 기준 대비 편성 비율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광고판매기준시간대별 편성비율’은 광고판매기준시간대별 편성실적을 평가하되, SA등급 시간대 편성실적(비율)×150%과 A등급 편성실적(비율)×100%를 합산하여 5등급 평가

<표2> 시급별 편성비율 평가 기준

20%이상	5점
15% 이상 ~ 20% 미만	4점
10% 이상 ~ 15% 미만	3점
5% 이상 ~ 10% 미만	2점
5% 미만	1점

##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KBS, MBC, SBS와 종편PP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지상파TV (50점)	종편PP* (40점)
오락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	25점	
보도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	25점	

(\*)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5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 기준

- 주시청시간대의 보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평가함
  - 주시청시간대라 함은 방송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3항에 의거, 평일은 오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함
  -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며, 방송프로그램 분류기준 고시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월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와 기준 적용

○ 오락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오락 분야의 편성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25점, 70% 이상인 경우 0점
- 오락 분야의 편성비율이 6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25점- (편성비율-60%)x2.5점]

○ 보도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는 아래와 같음

- 보도 분야의 편성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25점, 50% 이상인 경우 0점
- 보도 분야의 편성비율이 40% 이상 ~ 50% 미만인 경우 [25점- (편성비율-40%)x2.5점]

#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지상파TV-중앙\*

\* UHD 본방송 개시 사업자에 한정

##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UHD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3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UHD 방송프로그램 : 순차주사 방식으로 주사선수가 2,16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수가 3,840(이하 '4K'라고 한다) 이상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으로, 단위 방송프로그램의 50% 이상이 4K화질 이상으로 구성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의미함
- 방송시간 50% 추가 인정기준(중복적용 불가)
  - 지상파 UHD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 드라마, 다큐, 국민 관심행사(올림픽, 월드컵)의 중계 프로그램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UHD 프로그램
    -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19:00-23:00(평일) / 18:00-23:00(주말)
- 반복방송 인정기준
  - 재방송을 초과한 반복 방송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재방송 UHD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은 '19년 30% 인정\*
  - \* '20년 이후 인정 기준은 UHD 방송관련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재가공 프로그램(업스케일링/리마스터링)에 대한 인정기준
  - 업스케일링\*한 UHD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음
    - \* 업스케일링 : 영상의 화소 수를 단순 증가시키는 작업
  - 리마스터링\* UHD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은 '19년 30% 인정\*\*(단, 국내에 방송되지 않은 리마스터링 프로그램은 신규제작으로 간주)

\* 리마스터링 : 영상 화소 수 증가, 화질 보정, 프레임 보간 영상 생성, 노이즈 제거, 컬러 그레이딩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화질개선 작업(4K로 촬영하여 HD로 다운컨버팅한 프로그램의 화질복원 작업을 포함)

\*\* '20년 이후 인정 기준은 UHD 방송관련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제작여건을 고려한 예외 인정사항

- HD/UHD 채널에 드라마를 동시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HD로 방송 후 7일 이내에 UHD로 방송하면 초방에 한하여 UHD 본방송으로 간주

- UHD 프로그램은 50% 이상이 4K 영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작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50% 미만이 4K 영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4K로 방송된 시간만 인정

\* 예외 인정조항은 '19.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본 세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방통위 UHD 방송관련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평가 기준

- 허가조건에 따른 연도별 UHD 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19년 15% 이상 ('20년 이후의 경우, 허가조건에 따라 만점 비율이 달라짐)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15% 이상	15%미만 ~ 13.13%이상	13.12%미만 ~ 11.25%이상	11.25%미만 ~ 9.38%이상	9.38%미만 ~ 7.5%이상	7.5%미만 ~ 5.63%이상	5.63%미만 ~ 3.75%이상	3.75%미만 ~ 1.88%이상	1.88% 미만
지상파 TV-중앙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12점	9점	6점

\* 편성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 가. 평가대상

- KBS-1TV 지역총국, 지역MBC-TV, 지역민방-TV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70점
자체제작 비율 평가	30점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점

※ 자체편성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민방의 경우,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점수를 산정한 후, 70점 기준으로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평가
  - KBS-1 지역총국(10%), 지역 MBC(15%), 지역민방(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이라 함은
  - 해당 지역방송사(총국)가 자체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하나 지역방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도 포함
  - \*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양질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 장려를 위하여 전국에 방송된 지역 자체제작물 또는 지역 공동제작물은 편성시간의 50%를 가산하여 인정함
- 지역 자체제작물 편성시간으로 산정되는 지역 공동제작물의 경우도 전국에 방송되었을 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함
- KBS 지역총국(KBS-1TV)의 평가 기준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자체제작 비율	10% 이상	10%미만 8.75%이상	8.75%미만 7.5%이상	7.5%미만 6.25%이상	6.25%미만 5%이상	5%미만 3.75%이상	3.75%미만 2.5%이상	2.5%미만 1.25%이상	1.25%미만
KBS 지역총국 (KBS-1TV)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12점	9점	6점

\* 편성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 지역 MBC-TV의 평가 기준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자체제작비율	15% 이상	15%미만 13.12%이상	13.12%미만 11.25%이상	11.25%미만 9.37%이상	9.37%미만 7.5%이상	7.5%미만 5.62%이상	5.62%미만 3.75%이상	3.75%미만 1.87%이상	1.87%미만
지역 MBC-TV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12점	9점	6점

\* 편성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 지역 민방TV의 평가 기준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자체제작비율	20% 이상	20%미만 17.5%이상	17.5%미만 15%이상	15%미만 12.5%이상	12.5%미만 10%이상	10%미만 7.5%이상	7.5%미만 5%이상	5%미만 2.5%이상	2.5%미만
지역 민방TV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12점	9점	6점

\* 편성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이란

- 허가권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룬 프로그램을 의미함
- 편성시간 량 산정 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 인정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평가 기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최고 편성 실적\*을 기준으로 9등급 평가

\*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는 제외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배점
87.5% 이상	40점
75% 이상 ~ 87.5% 미만	36점
62.5% 이상 ~ 75% 미만	32점
50% 이상 ~ 62.5% 미만	28점
37.5% 이상 ~ 50% 미만	24점
25% 이상 ~ 37.5% 미만	20점
12.5% 이상 ~ 25% 미만	16점
12.5% 미만	12점
0%	8점

## 직접제작 ·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 나. 배점방식

편성비율	배점	
	SO (20점)	위성 (25점)
90% 이상	20점	25점
80% 이상 ~ 90% 미만	15점	20점
70% 이상 ~ 80% 미만	10점	15점
60% 이상 ~ 70% 미만	5점	10점
60% 미만(녹음 및 녹화 채널)	0점	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직접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직접제작 프로그램 : 해당 방송사업자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 외주제작 프로그램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정의는 방송법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1항의 기준을 따름
- 직접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실적을 기준으로 5등급 평가
-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는 편성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되, 직접사용채널이 2개 이상일 경우, 채널별 만점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널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채널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산정함
-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 가. 평가대상

- SO

###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30점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표1> 참조)	15점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표2> 참조)	15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액세스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액세스(시청자참여) 프로그램 : 방송제작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여 방송된 프로그램
- 액세스 프로그램을 SO간에 교환한 경우 편성실적으로 100% 인정함  
(교환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프로그램 편성을 배제하고 시간을 할애한 점을 인정)
- 액세스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 비영리법인이 제작하지 않은 시정뉴스나 선관위 제작 프로그램, 관내소식 등은 인정하지 않음

<표1>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에 따른 5등급 평가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점수
5% 이상	15점
3% 이상 ~ 5% 미만	11점
1% 이상 ~ 3% 미만	7점
1% 미만	3점
미편성시	0점

<표2>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평가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평가점수
노력 평가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 안내방송과 자막고지 실적으로 평가하며, 안내방송과 자막고지 실적의 평균 구한 후, 안내방송과 자막고지 모두 평균 이상이면 우수, 둘 중 하나만 평균 이상이면 보통, 둘 다 평균 이하면 미흡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SO

### 나. 배점방식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배점
	50점
80% 이상	50점
65% 이상 ~ 80% 미만	40점
50% 이상 ~ 65% 미만	30점
35% 이상 ~ 50% 미만	20점
20% 이상 ~ 35% 미만	10점
20% 미만	5점

\* 편성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범위는 방송법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제3항 제2, 3, 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제2항에 의거

**※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 ③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규칙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 등)**

- ②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1. 해당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
  2. 해당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 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표1> 참조)	5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개념 정의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비수익적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
- ※ 직·간접적인 상품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실적에서 제외
- 월간 단위로 편성되는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실적으로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표1>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시간(월간)에 따른 5등급 평가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시간	평가점수
90분 이상	5점
60분 이상 ~ 90분 미만	4점
30분 이상 ~ 60분 미만	3점
30분 미만	2점
미편성시	0점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지상파DMB-TV, 지상파DMB-R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 방송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중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DMB)에서 처음으로 방송된 프로그램
- 지상파 방송용으로 제작돼 수중계한 프로그램은 제외함
- 케이블 등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해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처음으로 방송된 프로그램 포함
- 매체별(지상파DMB TV, 지상파DMB 라디오)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표1> 참조)
  - \*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는 제외
-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 2개 이상일 경우, 채널별 만점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널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채널 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산정함

<표1> DMB용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5등급 평가(지상파DMB)

구분	평가등급의 비율	평가점수
지상파DMB TV, R (30)	80%이상	30점
	60%이상 ~ 80%미만	24점
	40%이상 ~ 60%미만	18점
	20%이상 ~ 40%미만	12점
	20% 미만	6점

\* 편성 실적이 0%인 경우, 0점 처리

#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SO	지상파DMB, 위성* (45점) 홈쇼핑PP* (40점) 지상파TV지역, 보도PP* (35점) 지상파R* (30점) 지상파TV중양, 종편PP* (25점)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의 4개 재무비율에 대해 5등급 평가	40점	

(\*) 점수 산정 방식

: SO 4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의 4개 재무비율에 대해 각 10점씩 총 40점 배점함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재무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단, 증가율의 경우 전년도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무비율을 평가대상으로 함)
- 4개 재무비율 산정 방식: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전 산업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 $\sigma$ )를 구하고,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른 구간별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함
  - 이에 따라 점수배점 구간을 5개 구간(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나누어 평가함

#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홈쇼핑PP(30점)	지상파DMB, 위성* (35점) 지상파R, SO* (25점) 지상파TV지역, 종편, 보도PP* (20점) 지상파TV중양* (15점)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10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15점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5점	

(\*) 점수 산정 방식

: 홈쇼핑PP 3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10점)

No.	세부 항목	내용	배점
1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을 정관에서 3% 미만으로 낮추고 있는 경우	+1
2	감사의 수	감사위원회 설치 또는 상근감사 있음	2
		감사위원회 미설치, 상근감사 없음	0
3	감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 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직무와 겸직 여부	직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음	2
		직무를 겸직하고 있음	0
		※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만점으로 함	
4	감사가 보유한 주식수와 지분율(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감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5	내부감사실 운영 여부 및 내부감사실의 조직구성	내부감사실 운영	2
		내부감사실 미운영	0
6	감사의 주요 업무경력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음	2
		업무경력이 충분하지 않음	1
7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중 부적격자 여부	부적격자가 없음	2
		부적격자가 있음	0

(\*) 방송관련 업무 또는 감사업무 경력 5년 이상에 준하는 업무경력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15점)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내용	배점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의견 거절	-15점
		부적정 의견	-10점
		한정 의견(감사범위제한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배)	-5점
2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검토범위의 중요한 제한”	-15점
		“경영자의 보고가 적절하지 아니함”	-10점
		“검토범위의 일부 제한”	-5점
		“경영자의 보고에 중요한 취약점이 일부 누락됨”	-3점
		“경영자의 중요한 취약점을 적절하게 보고함”	-2점
		※ 검토보고서 첨부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3	내부회계 관리규정 마련 여부	내부회계 관리규정 있음	2점
		없음	0점
4	내부회계 관리자	① 내부회계 관리자 지정(근거문서 제출)	1점
		내부회계 관리자 없음	0점
		② 상근임원	1점
		내부회계 관리자 없음	0점
5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또는 감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는지 여부	보고함	2점
		보고하지 아니함	0점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 보고할 경우 만점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본점수 1점으로 평가함	
6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및 윤리강령이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내부회계 관리제도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내용	①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1점
		윤리강령 없음	0점
		② 전달수단이 2가지 이상	0.5점
		전달수단 1가지	0.25점
		전달수단 없음	0점
		③ 인사 관련 조치 포함	0.5점
		인사 관련 조치 미포함	0.25점
조치내용 없음	0점		
7	업무분장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담당자, 정의, 승인권한, 업무절차 등)	누락된 세부항목 없이 문서에 의하여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	2점
		누락된 세부항목 1개	1.5점
		누락된 세부항목 2개	1점
		누락된 세부항목 3개 이상	0.5점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음	0점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내용	배점
8	재무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백업하는 절차	월간 단위	2점
		분기 단위	1점
		반기 단위	0.5점
		백업 절차 없음	0점
9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됨	1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에 의하여 수행됨	0.5점
		모니터링 실시하지 않음	0점
10	회사의 지배기구와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연간 2회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2점
		연간 1회의 커뮤니케이션	1점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음.	0점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함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인정)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외부감사 실시 내용” 상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수행시기와 일치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만 횟수로 인정. 임의감사에 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수행시기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점수로 인정\*

\* 수행시기, 방법, 커뮤니케이션 당사자, 내용 등 제출 (자세한 내용은 제출자료 양식에 기재)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5점)

	세부항목	내용	배점
1	감사보고서 공시의 적정성	① 감사보고서일까지의 기간 60일 이하	1점
		60일 초과 90일 이하	0.5점
		90일 초과	0점
		②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기간 75일 이하	1점
		75일 초과 105일 이하	0.5점
		105일 초과	0점
2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충분성	① 회사개황 공시함	1점
		공시하지 않음	0점
		② 주요 재무사항 공시함	1점
		공시하지 않음	0점
		③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 공시함	1점
		공시하지 않음	0점
		※ 회사개황,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	

##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보도PP (20점)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에 대한 5구간 평가	10점	위성* (35점) 지상파 DMB, 홈쇼핑PP* (30점) 지상파R, SO* (25점) 지상파TV지역* (20점) 지상파TV중양, 종편PP* (15점)
1인당 교육비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여 5구간 평가	5점	
직무능력 향상 교육시간	- 직무능력 향상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한 5구간 평가	5점	

(\* 점수 산정 방식

: 보도PP 2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10점)

- 각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을 산출하여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M)과 표준  
편차(SD)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 0.5, 1  
표준편차에 따라 5개 구간(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1인당 교육비 (5점)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여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5개 구간(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간(연 평균) (5점)

- 각 사업자의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 시간을 파악하여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5개 구간(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R (30점)	지상파TV중앙, 홈쇼핑PP* (40점) 지상파TV지역, 중편PP, 보도PP* (35점)	위성, 지상파 DMB (45점)	SO (40점)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에 대한 5등급 평가	15점		10점	10점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인증제품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비 비율에 대한 5등급 평가	15점		35점	30점

(\* )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R 3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비, 외주제작비, 프로그램 구입비 등) 비율을 구한 후 지상파 및 PP 사업자(중편PP, 보도PP, 홈쇼핑PP) 그룹과 SO/위성사업자 그룹에 대하여 각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 0.5, 1 표준편차에 따라 구간을 5개 구간(15점, 12점, 9점, 6점, 3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비 비율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방송기술투자,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액 등) 비율을 구한 후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중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 0.5, 1 표준편차에 따라 구간을 5개 구간(15점, 12점, 9점, 6점, 3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TV (20점)	위성* (35점) 지상파DMB, 홈쇼핑PP*(30점) 지상파R, SO*(25점) 중편PP,보도PP*(20점)
- 장애인고용비율(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을 산출하여 5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	10점	
- 여성고용비율(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을 산출하여 5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	10점	

(\*)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2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장애인고용비율 평가(10점)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장애인 고용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상시근로자수)
  -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산정
- 상시 근로자수 대비 3.1% 이상 장애인 고용시 1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며, 그 다음부터 0.5% 간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방송사업자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신고서상의 월평균 상시 근무자수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자(법인기준의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 항목 평가를 제외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자(법인기준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만점을 부여함
- 세부 배점

기준	3.1%이상	2.6%이상 ~ 3.1%미만	2.1%이상 ~ 2.6%미만	1.6%이상 ~ 2.1%미만	1.1%이상 ~ 1.6%미만	1.1%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여성고용비율 평가(10점)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여성고용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여성 종업원수를 평균 종업원수로 나누어서 구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중치는 80% : 20%로 함

$$\text{연도별 여성고용비율} = \frac{\text{여성 정규직 종업원수} \times 80\% + \text{여성 비정규직 종업원수} \times 20\%}{\text{정규직 종업원수} \times 80\% + \text{비정규직 종업원수} \times 20\%}$$

- 지상파(TV, R, DMB)의 경우 지상파 사업자 그룹(지상파 TV/R/DMB)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5개 구간(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의 경우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5개 구간(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정규직의 요건
  - (1)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었을 것
  -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 (3) 전일제 근로조건(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일 것
  - (4) 계속근무가능자일 것

(\*) 계속근무가능자 : 계속근무불가능자가 아닌 자

계속근무불가능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으로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없이도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자

##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가. 평가대상

- 지상파TV(중앙/지역), 지상파R, 지상파DMB, 종편PP, 보도PP

### 나. 배점방식

구분	배점	
	지상파TV (KBS, MBC, SBS, EBS), 종편PP	지상파TV(4사 제외), 지상파R*, 보도PP, 지상파 DMB*
	30점	10점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 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실시 적정성	5점	10점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	10점	-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적정성	7점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 간 상생협의체 등 운영 적정성	8점	-

※ 지상파R 및 지상파DMB-R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 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만 평가하여 만점 기준 환산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 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적정성

구분	내용	배점	
		지상파TV* 종편PP	기타
방송 프로그램 등의 유통 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①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	수립됨	2.5점
		수립되어 있지 않음	0점
	② 세부실행계획 수립 여부	수립됨	2.5점
		수립되어 있지 않음	0점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의 실시 적정성	① 세부실행계획의 달성정도	우수	2.5점
		미흡	0점
	② 세부실행계획 실시에 대한 평가 여부	실시함	2.5점
		실시하지 않음	0점

\* KBS, MBC, SBS, EBS

○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 5등급 평가

- 전체 제작 계약 건수 중 표준계약서 사용 건 수 비율 평가

<표1>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 기준

구분	100%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40% 미만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	10점	8점	6점	4점	2점

\* 활용 비율이 0%인 경우, 0점 처리

\* 표준계약서 : 문체부가 제시한 제작 표준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

○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적정성 평가

- 표준계약서 내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관련 사항 명시에 따른 평가

<표2>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평가 기준

구분	내용	배점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명시되어 있음 또는 확인서* 제출	7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는 확인서* 미제출	0점

\* 외주제작인력의 상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확인했다는 서류를 의미하며, 서류 작성의 주체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 모두 가능

○ 방송사·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간 소통·협력을 위한 상생협의체 제도 등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평가

<표 3> 상생협의체 제도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점수 기준

상생협의체 제도의 구성 여부(5점)	제도의 운영결과(3점)			
	운영결과 上	운영결과 中	운영결과 下	운영결과 없음
5점/0점	3점	2점	1점	0점

- 상생협의체 제도라 함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간 구성된 일체의 회의체 제도를 의미하며, 명칭은 방송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해당 협의체의 운영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적(회의록 등) 제출

\* 운영결과는, 운영결과의 정리, 전기 논의결과의 반영, 차기 일정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동일 사업자군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SO (40점)	위성* (45점) 홈쇼핑PP* (40점) 지상파TV지역, 보도PP* (10점) 지상파TV중앙, 지상파R, 지상파DMB, 종편PP* (5점)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평가	40점	

(\* ) 점수 산정 방식

: SO 4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점수 산정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구분	배점	배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전문성(8점)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지정	4점
		미지정	0점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적격성	적격	4점
		미적격	1점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 및 공개(17점)	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여부	수립	2점
		미수립	0점
	② 개인정보의 취급목적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3점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1점
		수립되지 아니함	0점
	③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유 기간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3점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1점
		수립되지 아니함	0점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 되는 경우)(*)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2점	

구분	배점	배점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않음	1점
	⑤ 개인정보취급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 되는 경우)(*)	수립되지 않음	0점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2점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않음	1점
	⑥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수립되어 있음	3점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않음	1점
		수립되지 않음	0점
	⑦ 개인정보 취급방안의 변경시 공개여부	공개 또는 미변경	2점
		변경시 미공개	0점
개인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행여부(6점)	① 개인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립되었으며 시행되고 있음	2점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1점
		수립되지 않음	0점
	②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구축됨	2점
		구축되지 않음	0점
	③ 개인정보 관리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립되었으며 시행되고 있음	2점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1점	
수립되지 않음		0점	
개인정보 관리 실태(9점)	①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절차의 적절성	암호화 절차가 적절함	3점
		암호화절차가 미흡함	1점
		암호화절차가 수립되지 않음	0점
	②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의 적절성	동의 절차가 적절함	3점
		동의 절차가 미흡함	1점
		동의 절차가 수행되지 않음	0점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의 적절성	파기 절차가 적절함	3점
		파기 절차가 미흡함	1점
		파기 절차가 수행되지 않음	0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 후, 매체별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함

##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 수신료 매출액 대비 수신료 PP 배분액 비율을 산출하여 5구간으로 나누어 평가	40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해당 연도의 수신료 매출액 대비 수신료 PP 배분액 비율을 산출하고 평균(M) 및 표준편차( $\sigma$ )를 산출하여,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5개 구간(40점, 32점, 24점, 16점, 8점)으로 나누어 평가 실시

##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및 PP만족도 평가

###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 점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	10점
PP 만족도 평가	3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10점)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배 점
1	채널공급 선정기준의 공개여부	① 공개 : 2점, 요청시 공개 : 1점, 비공개 : 0점	2점
2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여부	①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없음 : 3점 ②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이유가 기존계약서에 명시됨 : 3점 그 이유가 기존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 0점	3점
3	채널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지난 1년간 방송채널사업자로부터 채널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없음 : 2점 ② 이의가 있을 경우 선정심사정보를 제공함 : 2점, 제공하지 않음 : 0점	2점
4	무료계약 여부	① 지난 1년간 채널사업자와의 무료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음 : 3점 ② 지난 1년간 채널사업자와의 무료계약 채널의 수가 1개일 경우: 2점, 2~3개일 경우 1점, 4개 이상일 경우 0점 (단, 홈쇼핑 채널 제외)	3점

- PP 만족도 평가(30점)

- PP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함 (평균값 사용)
- 조사항목은 채널 선정방법에 대한 만족도, PP사용료 지급에 대한 만족도, 부당요구 등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됨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30점 만점으로 환산)

#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SO (25점)	위성 (30점)
- 디지털기본형상품의 공공,공익,복지,지역채널의 수 평가 (표1 참조)	15	20
- 디지털 기본형 상품 전체 채널 수 대비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대한 비율 평가 (표2 참조)	10	10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디지털 기본형 상품\* 내에서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
  - 이 때, 기본형 상품은 80개 채널 이상\* 상품 중 가장 저가의 상품을 의미함
  - \* 디지털 기본형 상품의 채널수가 100개를 넘는 경우, 100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평가
  - '18년 11월 기준, 공공, 공익, 장애인복지, 지역 채널의 수는 총 16개\*로, 지역채널은 1개 이상의 복수를 운영하더라도 1개로 산정
  - \* 공공채널 3개(KTV, 국회방송, OUN), 공익채널 11개(다문화tvM,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RTV, 사이언스TV, 아리랑TV, 예술TV Arte, MBC Net, EBS 플러스 1,2,English), 장애인복지채널 1개(복지TV), 지역채널

<표1>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따른 평가

SO	평가점수	위성	평가점수
16개	15점	15개	20점
15개	13점	14개	17점
14개	11점	13개	14점
13개	9점	12개	11점
12개	7점	11개	8점
11개	5점	10개	5점
10개 이하	2점	9개 이하	2점

<표2> 전체 채널 수 대비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대한 비율 평가

개수	평가점수
12% 이상	10점
10% 이상 ~ 12% 미만	6점
10% 미만	2점

#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30점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의 명문화 여부	4점
	-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3점
	- 중소기업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5점
	- 농어민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3점
	- 복수 업자간 공정 경쟁 유도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4점
	- 납품업자에게 선정기준 공개 여부	3점
	- 납품업자의 친인척인 임직원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지 여부	2점
	- 납품업자 제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절차 유무	2점
	- 상품 선정과 관련된 임직원 윤리강령 조항 유무	2점
	- 납품업자 불만 처리 창구 유무	2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세부 배점방식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배점
1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의 명문화 여부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 상품(납품업자) 평가 Sheet, 기타 명문화된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 지표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4점 부여	4점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배점
2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적절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1점 부여. 편성 실적이 있으나 5% 미만인 경우 1점, 5% 이상인 경우 2점 추가 부여	3점
3	중소기업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적절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2점 부여. 편성 실적이 있으나 50% 미만인 경우 1점, 50% 이상인 경우 3점 추가 부여	5점
4	농어민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적절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1점 부여. 편성 실적이 있으나 5% 미만인 경우 1점, 5% 이상인 경우 2점 추가 부여	3점
5	복수 업자간 공정 경쟁 유도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신상품 창구 개방, 복수협력사 거래, 기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부 기준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4점 부여	4점
6	납품업자에게 선정기준 공개 여부	신규입점 절차 및 선정기준 공고, 입점계시판 등의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상담창구에서 입점 상담시 구두로 공개,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선정기준 공개 절차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3점 부여	3점
7	납품업자의 친인척인 임직원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지 여부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규제사항, 관련 제보 접수 시 경영진단팀에서 사규를 통해 제재, 고객평가단의 상품 선정,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임직원의 선정 관여 배제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2점
8	납품업자 제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절차 유무	공공기관 또는 외부신용평가기관 등을 통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사전 품질 확인 절차, 사전심의 의무화, 고객평가단의 상품 선정, 회계재무팀 등 담당부서 재확인 절차,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서 사실 여부 확인 절차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2점
9	상품 선정과 관련된 임직원 윤리강령 조항 유무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내규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2점
10	납품업자 불만 처리 창구 유무	건의 창구 마련,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을 통한 불만 접수 및 처리, 즉각적인 불만 처리에 대한 상근조직 운영,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납품업자 불만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2점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 결과	20점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1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 결과,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으로 측정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항목 도입절차

- 1차 년도에는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항목을 제외하고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결과』 항목만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30점 만점으로 환산
- 2차 년도부터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항목을 평가하되,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시 협력업체의 개선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차기년도 반영 정도를 피드백의 적절성으로 평가
- 다만, 협력업체 일방의 입장이 협력업체 개선요구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요구사항의 정당성 및 귀책사유가 방송사에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피드백의 적절성을 평가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1	협력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만족도	협력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만족도 .....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4점
2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유통업체에 납부하는 방송 판매 수수료에 대한 만족도 ..... 유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4점
3	판매대금 지급에 대한 만족도	판매대금 기한 내 지급 여부에 대한 만족도 ..... 대금 납부 방법에 대한 만족도 ..... 납품 대금 감액 여부에 대한 만족도	4점
4	상품 취급에 대한 만족도	부당한 수령 지체 정도 ..... 부당한 반품 정도	4점
5	부당요구 등에 대한 평가	관측행사 강제 정도 ..... 경제적 이익 강요 정도 ..... 사업 활동 방해 정도	4점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1	평가결과 피드백 (개선활동)의 적절성	피드백을 적절하게 수행함	10점
		피드백을 수행하였으나 미흡함	5점
		피드백을 수행하지 않음	0점

##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	- 소비자원의 구제 조치 사항 건수에 따른 평가 (<표1> 참조)	3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조치 사항 건수에 따라 평가
  - 구제 조치는 단순 상담, 정보제공 등을 제외한 조치(환급, 교환, 수리/보수 등) 의미

<표1> 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에 따른 점수배점

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	점수
없음	30점
1건이상 3건이하	27점
4건이상 6건이하	24점
7건이상 9건이하	21점
10건이상 12건이하	18점
13건이상 15건이하	15점
16건이상 18건이하	12점
19건이상 21건이하	9점
22건이상 24건이하	6점
25건이상 27건이하	3점
28건이상	0점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심의관련 제재조치 결과 반영 감점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74조(협찬고지)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등
  - 수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점수에 50%만 반영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감점
  - ① 주의 1점
  - ② 경고 2점
  -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 ②+③, ②+④ 5점
  - ③+④, ②+③+④ 6점
  - ⑤ 과태료 4점
  - ⑥ 시정명령 8점
  -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시 10점
  -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 시 15점
    -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 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홈쇼핑PP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이 3회 이상 동일한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감점 가중
  - 한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유형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간으로 위반유형을 합산하여 누적건수가 더 많은 위반유형으로 분류하되, 누적건수가 동일한 경우 감점이 더 과중한 유형으로 분류
  - ①, ②, ④, ⑪의 유형 위반 시 2배 감점하되, 각 유형별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위반 유형으로 분류

- 그 외 유형 위반 시 1.5배 감점

※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은 아래와 같이 총 13개 유형으로 구분

- 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공정성'(제9조~제13조)
- 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제14조~제18조)
- ③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제19조~제23조)
- ④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제24조의2~4)
- 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제25조~제34조)
- 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제35조~제42조의2)
- ⑦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제43조~제45조의2)
- ⑧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제46조~제50조)
- 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방송언어'(제51조~제52조)
- 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9절 기타'(제53조~제55조의2)
- ⑪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⑫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 ⑬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 (홍쇼핑PP)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이 3회 이상 동일한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감점 가중

- 한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유형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간으로 위반유형을 합산하여 누적건수가 더 많은 위반유형으로 분류하되, 누적건수가 동일한 경우 감점이 더 과중한 유형으로 분류
- ①의 유형 위반 시 2배 감점하되,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위반 유형으로 분류
- 그 외 유형 위반 시 1.5배 감점

※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은 아래와 같이 총 5개 유형으로 구분

-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 일반원칙, 제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23조 최상급 표현'
-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① 제외)
-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격표시'
-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장 품목별 기준'
- 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장 금지 및 제한규정'

○ 제재조치 의결일이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수일 경우, 위반에 대한 선후 판단은 방통위 의결일, 방심위 의결일, 방심위 소위원회 의결일 순으로 정함

○ 최대 감점은 사업자군(群) 총점의 10%까지 감점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를 제외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직권결정 또는 법원 판결 건당 감점
  -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 4점
  - ②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6점
  - ③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 6점
-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 감점
- 최대 감점은 사업자군(群) 총점의 10%까지 감점
- 직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이의 신청 또는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 시 22.5점 감점하되,
-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 시 15점 감점
-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 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최대 감점은 사업자군(群) 총점의 10%까지 감점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 나. 평가점수 산정기준

- 공정거래법 감점내역

사업자별 배점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감점	2점	4점	8점	10점	15점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등 관계법령 감점내역

구분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감점	4점	8점	10점	15점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최대 감점은 사업자군(群) 총점의 10%까지 감점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